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7. 14 선고 2020가단684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

피고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

변론 종결2021. 6. 9.

판결 선고2021. 7. 14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160,955,4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0,955,427원

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C(다음부터 'C'라 한다)를 상대로 2018. 9. 10.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차7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. 9. 12. 위 법원으로부터 'C는 원고에게 160,955,4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지급명령을 받았고, 그 지급명령은 2018. 10. 2. 확정되었다.

나. C는 채무초과상태인 2018. 10. 4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다음부터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(다음부터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8. 10. 5.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다.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10,800,000원, 채무자 C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, 채권최고액 460,000,000원, 채무자 C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, 채권최고액 200,000,000원, 채무자 C로 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, 그 후 2018. 10. 25. 모두 말소되었다.

라.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으로 100,000,000원은 인정한다1).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0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0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

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100,000,000원을 초과하여 160,955,427원의 범위 내에서
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,955,4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
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차윤제

별지

1) 피고의 답변서 제4항 참조